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50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7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강동길, 권수정, 권영희,  
김달호, 김소영, 김호평, 김희걸,  
박순규, 봉양순, 송재혁, 이광호,  
이병도, 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  
이태성, 이호대, 임종국, 정재웅,  
정진술, 채인묵, 최웅식, 한기영,  
홍성룡 의원 (25명)

## 1. 제안이유

서울연구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·감시권한을 강화하고, 서울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자치구의 행정과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제4항 신설).
- 나. 서울연구원의 사업에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(안 제3조제6호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를 “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원장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한다)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 
구성한다. 다만, 이사회 구성 중 어  
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  
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